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 제출서류 목록

1. 국가보훈대상자	1
2. 저소득층학생	2
3. 특수교육대상자	3
4. 자립지원 대상자	4

1. 국가보훈대상자

가. 자격기준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①에 해당되는 자
-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나.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비고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처 관할(지)청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2026. 9. 1.(화)부터 발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함

※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전형명, 모집단위,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2. 저소득층학생

가. 자격기준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㉓~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㉓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본인 기준)	1부	•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중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증명서가 본인 기준이 아닌 경우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 지원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 또는 모 사망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사망 부 또는 모 기준
	부·모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기준)	1부	•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제출서류는 2026. 9. 4.(금)부터 발급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함

※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전형명, 모집단위,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3. 특수교육대상자

가. 자격기준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㉓~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㉓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총 1부	•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 국가보훈처 관할(지)청 발급

※ 제출서류는 2026. 9. 1.(화)부터 발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함

※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전형명, 모집단위,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4. 자립지원 대상자

가. 자격기준

- 자립지원 대상자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㉑~㉔)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㉑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㉒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㉓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㉔ 위 요건(㉑~㉓)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비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인가증) 사본	1부	• 아동복지시설장의 원본대조필 날인
	재원증명서	중 1부	재원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입소사실확인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입소일·퇴소일이 기재되어야 함 • 2020. 9. 30. 이전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2020. 10. 1. 이후 보호종료 아동 :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퇴소사실증명서		

※ 제출서류는 2026. 9. 1.(화)부터 발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함

※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전형명, 모집단위,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